

영등포구의회
제15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0. 10. 25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7호로 201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 개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 및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개정안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기여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신설(안 제2조제1항제4호)
- 징수촉탁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(안 제3조제7호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 제56조 제3항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
- 주요 내용
 -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함하는 호 신설(안 제2조제1항제4호),
 - 포상금 지급기준은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으로 신설(안 제3조제7호),
 - 그 밖에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

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에 관련된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련조례 준칙안에 의한 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관 계 법 령

■ 지방세법

제56조(징수촉탁)

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,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,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<신설 2010.1.1>